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관한 개정 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966)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이하 "3차 개정 상법").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함께 자기주식 보유·처분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19)과의 차이점은 (i)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자본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기업의 소각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ii) 부칙에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지분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에 한하여,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해당 법률 위반에 대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점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3차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인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시 및 자기주식의 활용 제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자기주식 담보 활용,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이 금지됩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2항, 제3항). 아울러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도 불가능합니다(3차 개정 상법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나. 자기주식 소각 의무 원칙 및 예외 사유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여야 합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제343조 제1항 단서).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이 준용됩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은성욱 변호사
02-528-5305
sweun@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최기림 변호사
02-528-5706
klchoi@yulchon.com

서경희 변호사
02-528-5324
khsuh@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 ① 각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② 제3자에게 처분가능한 경우: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소각 기간을 도과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에게 부여하였습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참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필수 기재사항(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 방법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의 세부 사항
 -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예정된 보유 기간
- 예정된 처분 시기

3차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가 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②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이사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차 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부칙 제3조).

다. 상장회사의 신탁계약 방식의 취득 규제

상장회사가 신탁계약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각 의무 및 처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존속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1년 이내 소각 또는 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보유·활용 규제가 적용됩니다(3차 개정 상법 제542조의16).

2.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3차 개정 상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소각 의무에 대한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다음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
 -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3. 타 법령과의 관계 및 후속 입법 필요

이번 3차 개정 상법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 4). 주주총회에서는 1년 단위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후, 개별 처분 시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처분하되, 처분 1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3월 또는 4월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안건 및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보고서(이하 “자기주식보고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6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한계, 사업보고서 공시에 첨부할 자기주식보고서의 내용과 향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의 차이로 인한 규제간 공백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3차 개정 상법에 따른 다양한 후속 입법이 시급합니다.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전제하여 그 처분을 손익거래로 취급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의 처리에 따른 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3차 개정 상법의 내용과 충돌하는 자본시장법 정비를 포함하여,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기업을 위해 실무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시행된 자기주식보고서 연 2회 공시 및 기 공시된 자기주식보고서의 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들을 3차 개정 상법 상의 연 1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규정과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3차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거나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4. 시사점

3차 개정 상법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기주식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제도적 전환점입니다. 1차 개정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2차 개정 상법(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이어 이번 3차 개정 상법까지 일련의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주주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곡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 수립 및 대응을 통하여 이번 개정을 단순한 규제 대응의 관점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정책 재설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Yulchon Legal Update

첫째, 자기주식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분류와 로드맵 수립입니다. 기 보유 자기주식을 취득 경위와 활용 목적별로 분류하고, 유예기간 내 소각·처분·보유의 최적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 필요)에 대해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관 변경의 건 검토입니다.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하므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상 필요(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 등)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IR 전략 및 자본배분 정책의 재정립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시장에 대한 자본환원 의지의 제도적 표현이므로, 이를 기업의 밸류업 전략과 연계하여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정책, 자기주식 매입·소각 계획, 성장투자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자본배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YCGC)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다양한 자문과 함께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대응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상법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	<p>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3 및 제462조의4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p>
<p><신 설></p>	<p>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p> <p>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p>
<p>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p> <p>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p>	<p>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p> <p>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p> <p>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343조(주식의 소각)</p> <p>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3조(주식의 소각)</p> <p>① -----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행	개정안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4. 「방송법」 제14조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p>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3, 제342조”를 “제341조의3, 제341조의4, 제342조”로 한다.</p>